##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27

발의연월일: 2024. 8. 12.

발 의 자:허 영·박지원·한병도

임호선 · 홍기원 · 서영교

박 정・박상혁・민형배

전재수 · 소병훈 · 박정현

이연희 • 이기헌 • 조계원

전용기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두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, 특정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급권자·차상위계층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조사의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며, 이들의 주거수 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 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

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,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2항제3호 등).

법률 제 호

##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중 "주거비의"를 "주거비나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20조제2항제3호 중 "곳"을 "곳과 지하층·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15조(주거비 보조) ①・② (생        | 제15조(주거비 보조) ①・② (현     |  |  |
|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|  |  |
|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          | ③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예산의 범위에서 <u>주거비의</u> 전     | 주거비나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          |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          |  |  |
| 다. <u>&lt;후단 신설&gt;</u>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이 경우 제20조제2항제3호에</u>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따른 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에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해서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           |  |  |
| 제20조(주거실태조사) ① (생          | 제20조(주거실태조사) ① (현행과     |  |  |
|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| 같음)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           | ②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1.・2. (생 략)                | 1.・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|  |  |
| 3.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<u>곳</u> 에 | 3 <u>곳과</u>             |  |  |
| 거주하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| 지하층・옥탑 등 대통령령으 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시설</u>               |  |  |
| 4. ~ 7. (생 략)              | 4. ~ 7. (현행과 같음)        |  |  |

③ ~ ⑥ (생 략)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